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7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 동 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 일 당)	숙 박 비 식 (1 일 당)	비 식 탁 료 (1 일 당)	
의 장 부 의 장	1 등 급	2 등 정액	정 액	정 액	갑지: 5,000 을지: 4,000	갑지: 17,000 을지: 15,000	갑지: 11,000 을지: 9,500	800
의 원	2 등 급	2 등 정액	정 액	정 액	갑지: 4,500 을지: 4,000	갑지: 14,000 을지: 11,500	갑지: 10,500 을지: 9,000	800

비 고 : ① “갑지”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“을지”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.

②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
③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④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부산직할시내에 여행할 때와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제 8 조(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 제2항중 “부산직할시내에서의”를 “부산직

할시내 및 여행거리 12Km이내의”로 한다.

제 8 조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(제8조 제1항 관련)

구 분	지 급 액
의장, 부의장	1일당 : 5,000원
의 원	1일당 : 4,500원

비 고 :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와 소재지내의 출장이 같은 날 병합할 때는 1일당 지급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 8 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제1항에서 “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 의 출장”이라 함은 <u>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.</u></p>	<p>제 8 조(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…………… …………… <u>부산직할시 내 및 여행거리가 12Km이내의 출장을 말 한다.</u></p>

신 · 구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 1) 국내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제1항 관련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철도 운임</th> <th>선박 운임</th> <th>항공 운임</th> <th>자동차 운 임</th> <th>현지교통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일당)</th> <th>식 비 (1일당)</th> <th>식탁료 1야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의장· 부의장</td> <td rowspan="3">1등급</td> <td rowspan="3">2등 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>특지: 4,500</td> <td>특지: 16,000</td> <td>특지: 10,500</td> <td rowspan="3">800</td> </tr> <tr> <td>감지: 4,500</td> <td>감지: 15,000</td> <td>감지: 10,000</td> </tr> <tr> <td>울지: 4,000</td> <td>울지: 13,500</td> <td>울지: 9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의 원</td> <td rowspan="3">2등급</td> <td rowspan="3">2등 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>특지: 4,000</td> <td>특지: 13,500</td> <td>특지: 10,000</td> <td rowspan="3">800</td> </tr> <tr> <td>감지: 4,000</td> <td>감지: 11,500</td> <td>감지: 9,500</td> </tr> <tr> <td>울지: 3,500</td> <td>울지: 10,500</td> <td>울지: 8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1. "특지"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과천시, 경주시 및 제주시로, "감지"는 도청소재지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의정부시, 안산시, 구리시, 원주시, 강릉시, 속초시, 충주시, 이리시, 군산시, 목포시, 여수시, 나주시, 구미시, 포항시, 영천시, 마산시, 울산시, 진주시, 서귀포시로, "울지"는 기타지역으로 한다. 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·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. 3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,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</p>		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식탁료 1야당	의장·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특지: 4,500	특지: 16,000	특지: 10,500	800	감지: 4,500	감지: 15,000	감지: 10,000	울지: 4,000	울지: 13,500	울지: 9,000	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특지: 4,000	특지: 13,500	특지: 10,000	800	감지: 4,000	감지: 11,500	감지: 9,500	울지: 3,500	울지: 10,500	울지: 8,500	<p>(별표 1)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(제7조 제1항 관련) 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철도 운임</th> <th>선박 운임</th> <th>항공 운임</th> <th>자동차 운 임</th> <th>현지교통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일당)</th> <th>식 비 (1일당)</th> <th>식탁료 1야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의 장 부의장</td> <td rowspan="3">1등급</td> <td rowspan="3">2등 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>감지: 5,000</td> <td>감지: 17,000</td> <td>감지: 11,000</td> <td rowspan="3">800</td> </tr> <tr> <td>울지: 4,500</td> <td>울지: 15,000</td> <td>울지: 9,500</td> </tr> <tr> <td>감지: 4,500</td> <td>감지: 14,000</td> <td>감지: 10,5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의 원</td> <td rowspan="3">2등급</td> <td rowspan="3">2등 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 rowspan="3">정액</td> <td>울지: 4,000</td> <td>울지: 11,500</td> <td>울지: 8,500</td> <td rowspan="3">800</td> </tr> <tr> <td>감지: 4,000</td> <td>감지: 11,500</td> <td>감지: 9,000</td> </tr> <tr> <td>울지: 4,000</td> <td>울지: 11,500</td> <td>울지: 9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① "감지"는 서울특별시, 직할시,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"울지"는 감지외의 지역으로 한다. ②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 ③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④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부산직할시내에 여행할 때와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</p>			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식탁료 1야당	의 장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감지: 5,000	감지: 17,000	감지: 11,000	800	울지: 4,500	울지: 15,000	울지: 9,500	감지: 4,500	감지: 14,000	감지: 10,500	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울지: 4,000	울지: 11,500	울지: 8,500	800	감지: 4,000	감지: 11,500	감지: 9,000	울지: 4,000	울지: 11,500	울지: 9,000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식탁료 1야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·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특지: 4,500	특지: 16,000	특지: 10,500	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감지: 4,500	감지: 15,000	감지: 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울지: 4,000	울지: 13,500	울지: 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특지: 4,000	특지: 13,500	특지: 10,000	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감지: 4,000	감지: 11,500	감지: 9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울지: 3,500	울지: 10,500	울지: 8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 비 (1일당)	식탁료 1야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감지: 5,000	감지: 17,000	감지: 11,000	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울지: 4,500	울지: 15,000	울지: 9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감지: 4,500	감지: 14,000	감지: 10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2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울지: 4,000	울지: 11,500	울지: 8,500	8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감지: 4,000	감지: 11,500	감지: 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	울지: 4,000	울지: 11,500	울지: 9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 3)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여 행 거 리</th> <th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2킬로미터 이상</td> <td>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</td> </tr> <tr> <td>12킬로미터 미만</td> <td>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5할</td> </tr> <tr> <td>8킬로미터 이상</td> <td rowspan="3">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</td> </tr> <tr> <td>8킬로미터 미만</td> </tr> <tr> <td>2킬로미터 이상</td> </tr> <tr> <td>2킬로미터 미만</td> <td>지급하지 아니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대중교통 수단의 정기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	여 행 거 리	지 급 액	12킬로미터 이상	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	12킬로미터 미만	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5할	8킬로미터 이상	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	8킬로미터 미만	2킬로미터 이상	2킬로미터 미만	지급하지 아니함	<p>(별표 3)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 급 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장·부의장</td> <td>1일당: 5,000원</td> </tr> <tr> <td>의 원</td> <td>1일당: 4,5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: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와 소재지내의 출장이 같은날 병합할 때는 1일당 지급액을 초과지급할 수 없다.</p>			구 분	지 급 액	의장·부의장	1일당: 5,000원	의 원	1일당: 4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여 행 거 리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킬로미터 이상	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킬로미터 미만	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5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킬로미터 이상	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킬로미터 미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킬로미터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킬로미터 미만	지급하지 아니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장·부의장	1일당: 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1일당: 4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